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0
----------	-----

2018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8. 10. 31.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8. 11. 5.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8. 12. 3.)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8. 12. 4.)
 -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8. 12. 5.)
 -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18. 12. 14.)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및 요지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금년보다 1조 209억 원(49.7%) 증가한 총 3조 738억 원으로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2조 3,841억 원이고 실집행 사업비는 6,897억원임

기금별 운용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 2019년도 기금별 운영규모

(단위 : 억 원)

기금명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2019	2018	증 감	
합 계	30,738	20,529	10,209	
재정투융자기금	10,284	5,915	4,369	◦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	3,320	2,500	820	◦ 소상공인 직접융자 및 혁신성장펀드
식품진흥기금	87	99	△12	◦ 식품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 교육·홍보
기후변화기금	664	681	△17	◦ 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회투자기금	286	169	117	◦ 사회적기업 및 사회주택 융자
도로굴착복구기금	362	384	△22	◦ 도로굴착 복구 및 사후관리
성평등기금	12	11	1	◦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621	666	△45	◦ 양천·강남·노원·마포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회복지기금	429	500	△71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 저소득층 주택 임대료 보조 및 융자
체육진흥기금	139	92	47	◦ 시민·생활체육 육성, 야구장 시설 개보수
감채기금	6,192	1,832	4,360	◦ 시 채무 원리금 상환
재난관리기금	7,477	7,091	386	◦ 재난예방, 응급복구,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53	108	245	◦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대외협력기금	125	133	△8	◦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지역개발기금	10	9	1	◦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지원
도시재생기금	377	339	38	◦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주민역량 강화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엄지운)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개요

-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개별 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서울시가 2019년도에 운용할 16개 기금(23계정)의 총운용 규모는 3조 737억 9,200만원으로, 2018년도(2조 529억 5,100만원) 보다 49.7%, 1조 208억 4,1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3-1〉 기금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안)	2018	증 감	증 감 륜
총	운 용 규 모	3,073,792	2,052,950	1,020,841	49.7
	기 금 사 업 (용자사업포함)	688,438	639,660	48,778	7.6
	재 무 활 동 (예탁, 예치, 예수금상환 등)	2,384,098	1,412,027	972,071	68.8
	행 정 운 영 경 비	1,255	1,263	△8	△0.6

- 금년도의 경우 16개 기금 22개 계정을 운영하였으나 '18년 10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19년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보다 1개 계정이 신설된 16개 기금 23개 계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15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대외협력기금**의 경우, 각종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구호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당초 조성 취지에 따라 지속적인 운용의 필요성 등으로 '18년 9월, 제283회 임시회중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²⁾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임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시행 '18.10. 4

〈표 3-2A〉 기금현황 (16개 기금, 23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1	재정투융자기금	1992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특별회계 및 타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1965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3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018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투자지원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4	식품진흥기금	1989	영구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5	기후변화기금	2007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6	사회투자기금	2012	'21.12.31	지방자치법 142조,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7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8	성평등기금	1996	'22.12.31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9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계정	1996	영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조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0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계정	2013	'21.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장기적 운영을 위해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993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12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999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표 3-2B〉 기금현황 (16개 기금, 23개 계정)

연번	기금명	설치	존속기한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13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999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14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02	'22.12.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5	체육진흥기금	2000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체 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의 안정적 지원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16	감채기금	2001	'2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17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03	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각종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18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003	영구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재 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자연재해 발생시 응급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19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22.12.31	지방자치법 142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20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2007	'23.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21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005	'23.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22	지역개발기금	2017	영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 금 설치조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설치, 운용함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3	도시재생기금	2017	'21.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재생 기반 마련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 기금조성규모

□ 16개 기금의 2019년도말 조성액은 3조 846억 2,400만원으로 계획된 바, 2018년도말 조성액(4조 1,820억 9,700만원)보다 △26.2%, △1조 974억 7,3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3-3〉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		2019년도말 조성액	증 감	증감률
		수 입	지 출			
합 계	4,182,097	643,809	1,741,282	3,084,624	△1,097,473	△26.2
재정투융자기금	2,483,086	63,824	433,426	2,113,484	△369,602	△14.9
중소기업육성기금	114,712	217,334	315,988	16,058	△98,653	△86.0
- 융자계정	111,831	197,734	293,507	16,058	△95,773	△85.6
- 투자계정	2,880	19,600	22,480	-	△2,880	△100.0
식품진흥기금	66,234	2,938	4,861	64,311	△1,923	△2.9
기후변화기금	59,759	20,140	15,202	64,698	4,938	8.3
사회투자기금	5,871	22,695	21,850	6,717	845	14.4
도로굴착복구기금	13,249	22,985	25,066	11,167	△2,081	△15.7
성평등기금	24,021	937	950	24,009	△12	△0.1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3,899	48,903	53,492	19,310	△4,589	△19.2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3,629	26,369	30,992	19,006	△4,623	△19.6
-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70	22,534	22,500	304	34	12.6
사회복지기금	50,627	23,113	31,394	42,346	△8,281	△16.4
- 노인복지계정	13,425	322,805	973	12,774	△651	△4.8
- 장애인복지계정	23,656	2,073	3,025	22,705	△951	△4.0
- 자활계정	6,751	645	843	6,553	△197	△2.9
- 주거지원계정	6,793	20,070	26,552	312	△6,481	△95.4
체육진흥기금	56,196	9,648	10,623	55,222	△974	△1.7
감채기금	615,622	3,566	615,351	3,837	△611,785	△99.4
재난관리기금	642,586	138,401	154,330	626,657	△15,929	△2.5
- 재난계정	367,276	136,104	147,006	356,374	△10,901	△3.0
- 구호계정	275,310	2,297	7,324	270,283	△5,027	△1.8
남북교류협력기금	13,992	25,482	15,050	24,425	10,432	74.6
대외협력기금	6,436	6,016	6,008	6,444	7	0.1
- 국내협력계정	3,227	2,553	2,845	2,936	△291	△9.0
- 국제협력계정	3,209	3,463	3,163	3,508	299	9.3
지역개발기금	5,799	148	14	5,934	134	2.3
도시재생기금	-	37,672	37,672	-	-	-

- 기금의 조성규모를 검토하면, 2019년도 수입계획은 6,438억 900만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 등의 수입액 증가로 2018년도(5,887억 4,700만원) 보다 9.3%, 550억 6,200만원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 3-4〉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수입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안)	2018	2017	2016	2015
당해연도 수입계획	643,809	588,747	625,689	735,253	1,051,246
증감액	55,062	△36,942	△110,064	△315,993	32,793
증감률	9.3	△5.9	△14.9	△30.1	3.2

- 지출계획은 2019년도에 1조 7,412억 8,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감채기금,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등의 지출액 증가로 2018년도(9,948억 3,800만원) 보다 75.0%, 7,464억 4,4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표 3-5〉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지출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안)	2018	2017	2016	2015
당해연도 지출계획	1,741,282	994,838	1,068,381	936,309	1,178,752
증감액	746,444	△73,543	132,072	△242,443	△325,550
증감률	75.0	△6.8	14.1	△20.6	△21.6

(3) 기금운용계획

- 2018년도에 운용계획인 16개 기금은 총 3조 737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9.7%, 1조 208억 4,100만원 증가한 것임
- 기금 운용규모 상위 5개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채기금, 기후변화기금으로
 - 재정투융자기금은 금년도(5,914억 9,400만원)보다 73.9%, 4,369억 5,400만원 증가한 1조 284억 4,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7,091억 2,700만원)보다 5.4%, 385억 2,100만원 증가한 7,476억 4,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감채기금은 금년도(1,831억 6,000만원)보다 238.1%, 4,360억 2,700만원 증가한 6,191억 8,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2,499억 9,800만원)보다 32.8%, 820억 4,800만원 증가한 3,320억 4,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기후변화기금은 금년도(680억 6,700만원)보다 △2.5%, △16억 6,700만원 감소한 664억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6〉 기금운용계획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2019(안)	2018	증	감	증	감	률
합	계		3,073,791	2,052,950	1,020,840				49.7
재정	투	용	1,028,449	591,494	436,954				73.9
중소	기업	육성	332,046	249,998	82,048				32.8
	용	자	309,566	249,998	59,568				23.8
	투	자	22,480	-	22,480				-
식품	진	흥	8,673	9,892	△1,218				△12.3
기후	변	화	66,400	68,067	△1,667				△2.5
사회	투	자	28,567	16,914	11,652				68.9
도로	굴	착	36,234	38,350	△2,116				△5.5
성	평	등	1,159	1,114	44				4.0
자원	회수	관련	62,143	66,564	△4,421				△6.6
	자원	회수	39,338	37,688	1,650				4.4
	수도권	매립지	22,804	28,876	△6,071				△21.0
사회	복	지	42,920	50,031	△7,111				△14.2
	노	인	1,748	2,109	△361				△17.1
	장	애	11,330	12,039	△708				△5.9
	자	활	2,976	2,246	730				32.5
	주	거	26,864	33,636	△6,771				△20.1
체육	진	흥	13,854	9,266	4,587				49.5
감	채	기	619,188	183,160	436,027				238.1
재난	관	리	747,648	709,127	38,521				5.4
	재	난	503,380	499,104	4,276				0.9
	구	호	244,267	210,022	34,244				16.3
남북	교	류	35,332	10,875	24,457				224.9
대외	협	력	12,453	13,280	△827				△6.2
	국	내	5,781	8,209	△2,427				△29.6
	국	제	6,672	5,071	1,600				31.6
지역	개	발	1,048	913	134				14.8
도시	재	생	37,672	33,897	3,775				11.1

2. 기금별 검토

(1)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기금 등의 용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서
- 재정투융자기금의 2019년도말 조성액은 2조 1,134억 8,400만원으로 계획한 바, 2018년도말 조성액(2조 4,830억 8,600만원)보다 3,696억 200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제출함

〈표 3-7〉 재정투융자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2019(안)	2,483,086	63,824	433,426	△369,602	2,113,484
2 0 1 8	2,331,790	104,074	47,222	56,852	2,483,086
2 0 1 7	2,576,007	116,964	361,181	△244,217	2,331,790
2 0 1 6	2,665,577	170,513	260,082	△89,569	2,576,007
2 0 1 5	2,836,459	394,006	564,888	△170,882	2,665,577
2 0 1 4	3,325,508	364,828	853,877	△489,049	2,836,459

- 2019년도 동 기금의 수입은 2018년도보다 4,369억 5,500만원 증가한 1조 284억 4,900만원을 운용할 예정임

- 동 기금의 2019년도에 대한 수입계획이 2018년도 수입계획 (5,914억 9,400만원)보다 4,369억 5,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수입이 증가되어 그동안 빌려주었던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고, 용자받는 등의 사유로 수입규모가 증가된 것임

〈표 3-8〉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 0 1 9 (안)	2 0 1 8	증 감
합 계	1,028,449	591,494	436,955
용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23,486	21,974	1,512
예탁금원금회수	256,130	215,914	40,216
예 치 금 회 수	708,495	271,506	436,989
예 수 금	13,294	55,445	△42,151
이 자 수 입	27,044	26,655	389

- 2019년도의 주요지출 계획은 1조 284억 4,900만원으로 2018년도보다 예탁금이 3,161억원 증가하고 예수금원리금회수액은 2,146억원 증액시켜 운용할 계획임

〈표 3-9〉 재정투융자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 0 1 9 (안)	2 0 1 8	증 감
합 계	1,028,449	591,494	436,955
기 본 경 비	2	2	0
예 탁 금	331,100	15,000	316,100
예 치 금	269,923	357,728	△87,805
예수금원리금회수	433,424	218,764	214,660

○ 재정투융자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 받아 재원이 부족한 회계(기금)에 융자·예탁하는 등 회계(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 각 회계(기금)의 장기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수익을 얻거나, 예수·융자금으로 지원받아 사업추진에 활용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 재정투융자기금의 융자나 예탁이 내부거래의 일환으로서 회계(기금) 간의 투명성을 저해시키고, 각 회계나 기금의 실질적인 잔액이나 운용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는 단점이 있음
- 현재와 같이 기금수, 계정수가 증가하는 경우 재정투융자기금의 내부거래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 적정 기금수를 관리·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영 중임³⁾
- '18년 9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하여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이 추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분리운영하게 된 것임
-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계정 운용규모는 3,095억 6,600만원으로 2018년도(2,499억 9,800만원)보다 595억 6,800만원 증액 운용할 것으로 계획하는 바
 - 융자사업으로 중소기업직접융자 2,500억원(500억원 증액),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380억원(△10억원 감액),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7억 2,800만원.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로 11억 6,000만원을 계획하고
 - 재무활동 사업은 여유자금 예치금액이 89억 1,2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 기금의 운용규모는 금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검토됨

3) 중소기업융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을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4) 4) 시행 '18.10.4

〈표 3-1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전년도지출계획	비교증감
합계		309,566	249,998	59,568
중소기업 금융지원		289,889	239,134	50,755
	중소기업금융지원	289,889	239,134	50,755
	중소기업직접융자	250,000	200,000	50,000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38,000	39,000	△1,000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728	-	728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4	134	0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1,026	-	1,026
행정운영경비		1,000	1,000	0
	기본경비	1,000	1,000	0
재무활동		18,676	9,763	8,913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예수금 상환	2,618	2,398	220
	여유자금예치	16,058	7,365	8,693

○ 신설된 투자계정의 경우 운용규모는 224억 8,000만원이며 예수금 원금이자 2억 1,600만원, 사무관리비 4,200만원, 펀드관리에 따른 위탁사업비 3억 7,300만원을 제외한 216억 5,000만원을 서울미래 혁신펀드로 조성할 계획임

- 동 투자계정으로 조성하려는 (가칭)서울미래 혁신성장펀드⁵⁾는 중앙정부·민간투자자 함께 1조 2,000억원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5) 경제정책과-2332 (2018. 2.24.)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표 3-11〉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전년도지출계획	비 교 증 감
합 계		22,480	0	22,480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지원		22,438	0	22,438
	혁신성장펀드 조성	22,023	0	22,023
	4차산업혁명펀드 출자	3,250	0	3,250
	스마트시티펀드 출자	3,250	0	3,250
	창업지원펀드 출자	4,250	0	4,250
	제도전지원펀드 출자	4,500	0	4,500
	제2호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3,400	0	3,400
	문화콘텐츠산업펀드 출자	3,000	0	3,000
	혁신성장펀드 운용 및 관리	373	0	373
	G밸리기업펀드	200	0	200
	G밸리기업 펀드출자	200	0	200
	재무활동	215	0	215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예수금(이자) 상환	215	0	215
행정운영경비		42	0	42
	기본경비	42	0	42

(3)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과징금 수입과 운용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 동 기금의 2019년도말 조성액은 643억 1,100만원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보다 9억 1,2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제출한 바
 - 수입계획의 경우 융자금이나 과징금 회수 감소 등의 사유로 '18년도보다 △12억 1,800만원 감소된 98억 9,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지출계획도 2018년도 지출계획(98억 9,200만원)보다 △12억 1,800만원이 축소된 86억 7,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12〉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2019(안)	66,234	2,938	4,861	△1,923	64,311
2 0 1 8	67,146	3,245	4,157	△912	66,234
2 0 1 7	67,538	3,662	4,054	△392	67,146
2 0 1 6	67,439	3,919	3,819	99	67,538
2 0 1 5	65,942	5,343	3,846	△1,497	67,439
2 0 1 4	64,939	6,172	5,169	1,003	65,942

〈표 3-13〉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안) 지출계획	2018 지출계획	비교증감
합 계		8,673	9,892	△1,218
식품의약안전		8,668	9,887	△1,218
	위생관리시설개선 용자사업	1,500	2,000	△500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	1,500	2,000	△500
	교육홍보사업	609	627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54	68	△13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4	559	△4
	식중독예방사업	195	195	-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	195	-
	음식문화 개선사업	1,425	1,497	△71
	음 식 문 화 개 선	382	382	-
	덜 짜고 덜 달게 실천 배움터 운영	300	297	3
	서울시민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593	668	△74
	먹 거 리 통 계 및 기 반 구 축	150	150	-
	식품안전관리사업	696	832	△136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118	96	21
	음 식 점 위 생 등 급 제 운 영	-	105	△105
	식 품 안 전 전 문 교 육	50	44	5
	식 품 위 생 업 소 지 도 점 검	293	293	-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	24	-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90	149	△59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20	119	1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0	20	-
	자 치 단 체 징 수 교 부 금	20	20	-
	조사연구 평가사업	381	381	-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81	381	-
	재무활동비	3,841	4,334	△492
	여유자금 예치	3,811	4,304	△492
	반환금 기타	30	30	-
기타		5	5	-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 동 기금의 세부사업 중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지원”의 경우,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위생관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18년도 집행내역 확인 결과 계획된 융자금(20억원)중 6억 2,400만원만 융자가 되는 등 융자소요가 크지 않고,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19년도의 경우에도 융자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상향될 만한 개선사항이 없어 보다 현실적인 융자사업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수도 있으나 기금사업의 특성상 이월이나 불용에 무풍지대일 수밖에 없어 일반회계의 세출재원과 동일하게 당초 지출계획이 실현되도록 사업을 구성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4〉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지원사업의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년	도	지	출	계	획	집	행	액	집	행	률
2	0	1	8		2,000			624			31.2
2	0	1	7		500			379			75.8
2	0	1	6		2,000			215			10.7
2	0	1	5		3,000			330			11.0
2	0	1	4		3,000			818			27.3

※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12081 ('18.11.26)

(4) 기후변화기금

- 동 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도에 설치되었음
- 동 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597억 5,900만원)보다 49억 3,800만원 증가된 646억 9,800만원을 '19년도말 조성액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3-15〉 기후변화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2019(안)	59,759	20,140	15,202	4,938	64,698
2018	50,388	62,750	53,388	9,362	59,759
2017	45,842	32,090	27,543	4,546	50,388
2016	47,739	18,245	20,142	△1,897	45,842
2015	51,645	17,608	21,513	△3,905	47,740
2014	67,077	14,182	29,614	△15,432	51,645

○ 지출계획의 경우 '18년도(680억 6,700만원)보다 △16억 6,700만원 감소된 660억 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18년도 기금사업중 일부를 지출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표 3-16〉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	전년도계획	비교증감
합 계		66,400	68,067	△1,667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15,198	56,021	△40,823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민간부문)	2,600	38,289	△35,689
	민간재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29,789	△29,789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용자지원	1,600	1,600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	800	200
	시민펀드 햇빛발전소 용자지원	-	6,100	△6,100
	에너지합리화사업(민간부문)	12,598	17,732	△5,134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지원(기후변화기금)	10,000	15,000	△5,000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지원(기후변화기금)	800	800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343	1,096	247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	14	15	△1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40	120	20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	300	-
행정운영경비		4	4	-
	기금관리비	4	4	-
재무활동		51,198	12,042	39,155
	여유자금 예치	51,198	12,042	39,155

(5) 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임
- 동 기금의 '19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8년도말 조성액(58억 7,100만원)보다 8억 4,500만원 증가된 67억 1,7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지출계획의 경우, 금년도보다 116억 5,200만원 증가된 285억 6,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표 3-17〉 사회투자기금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년 도 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연 도 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2 0 1 9 (안)	5,871	22,695	21,850	845	6,717
2 0 1 8	6,901	10,013	8,983	1,030	5,871
2 0 1 7	9,925	13,265	16,290	△3,024	6,901
2 0 1 6	22,856	8,823	21,754	△12,930	9,925
2 0 1 5	32,758	5,701	15,603	△9,901	22,856
2 0 1 4	37,974	3,543	8,760	△5,216	32,758

〈표 3-18〉 사회투자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안)	2018	증 감
계		28,567	16,914	11,652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21,850	14,270	7,520
	소셜하우징 사업 용자	5,000	5,000	-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50	1,000	20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14,000	9,000	5,000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용자	2,500	-	2,500
기금관리비		200	140	60
여유자금예치		6,717	2,644	4,072

○ 지출계획중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의 경우, **임팩트투자펀드 조합 출자금 10억원을 지출계획하고 있는 바**

- 기금의 지출항목이라도 출자금을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③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⁶⁾

- 지난 10월 17일,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하여 11월28일 관련 「출자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번 제284회 정례회중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으나 출자금 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은 이행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기금의 지출계획 중, **소셜하우징 사업 용자**는 2017년도부

6)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터 이월된 11억 3,600만원만 집행하고, 2018년도에 계획된 50억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의 경우, 융자금(80억원)중 33억 1,0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융자성 사업의 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어 융자성 사업의 사업내용을 재검토·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9〉 사회적투자기금 지출계획(안) 및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9(안) 지출계획	2018 ^{주1)}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28,567	16,914	5,803	29.9
소셜하우징사업 융자	5,000	6,136	1,136	18.5
사회적금융기관 협력사업 이차보전	150	130	23	17.6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지원융자	10,000	8,000	3,310	41.3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융자연계지원	3,000			
임팩트투자펀드 조합 출자금	1,000	1,000	-	0.0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융자	2,500	-	-	-
기금관리비	200	140	22	15.7
여유자금예치	6,717	2,644	-	0.0

※ 주1) 2018.11. 5 현재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12081 ('18.11.2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2항7)은 지역개발기금만 위탁운용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소속 공무원이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동 기금을 운용하는 사회적경제담당관은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⁸⁾을 근거로 기금운용을 현재까지 민간금융회사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해당부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원론적 답변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유사한 사안에 대해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⁹⁾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은 금지된다고 회신한 바
- 현재 동 기금이 위탁운용은 아니라 하나 A금융기관에 용자 후 A가 개별사안에 용자하는 형태로 결국 기금운용을 우회적으로 위탁한 형태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행 기금의 지출방식이 「기금관리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될 수 있어 추가적인 법리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287(2016.10.17.)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운용 민간위탁 금지 관련 질의회신

■ 질의 : 기금을 해당목적사업 공모를 통한 사회적 금융기관에 용자하고, 다시 사회적 금융기관은 그 용자금을 사회적 경제기업에 채용자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기금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질의하신 내용은 용자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기금을 용자 등 관리·운영함에 있어 다른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994(2016.8.10.)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질의 회신」

■ 질의 : 기금(지역개발기금 제외)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 회신 : 법률 제13428호, 2015.7.24.일부개정, 2016.1.1.시행에 의거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은 금지됩니다.

(6)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도로굴착원 인자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동 기금의 '19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8년도말 조성액(132억 4,900만원)보다 △20억 8,100만원 감소된 111억 6,700만원 으로 제출됨

〈표 3-20〉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2019(안)	13,249	22,985	25,066	△2,081	11,167
2018	14,408	44,068	42,909	△1,159	13,249
2017	16,470	23,224	25,287	△2,062	14,408
2016	17,265	23,234	24,029	△794	16,470
2015	15,824	25,709	24,267	1,442	17,265
2014	16,463	22,675	23,314	△639	15,824

- 지출계획의 경우, 금년도보다 △21억 1,600만원 감소된 362억 3,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표 3-21〉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계획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전년도지출계획	비교증감
합계		36,234	38,350	△2,116
도로		36,233	38,349	△2,116
	도로시설물 관리	25,065	25,269	△204
	도로굴착복구공사	24,863	25,080	△217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202	189	12
	재무활동	11,167	13,079	△1,912
	여유자금예치	11,167	13,079	△1,912
기타		1	1	-
	행정운영경비	1	1	-
	기금관리비	1	1	-

(7) 성평등기금

- 성평등기금은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 38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된 기금임
- 동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6억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어 자체적인 수입확대에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지출계획의 80.2%, 9억 3,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9억원을 지출계획하고 있는 바
 - 공모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매년 동일한 형태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이 감소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 기금의 수입구조와 지출계획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2〉 성평등기금 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19(안)	2018	2017	2016	2015
당 초 예 산 ^{주 1)}	900,000	900,000	1,000,000	861,449	616,429
지 원 액	-	828,851	843,400	701,580	610,723
단 체 (사 업) 수	40개 내외	38	54	44	44
단 체 (사 업) 별 지 원 액	30,000	20,000	15,625	15,945	13,880

※ 주1) 공모사업 평가비 제외

(8)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 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의하여 ①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계정, ②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음
-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계정의 경우, 금년도보다 16억 5,000만원 증가한 393억 3,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 개선계정은 금년도보다 △60억 9,300만원 감소된 225억을 지출할 계획임

〈표 3-23〉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2019(안)	23,629	26,369	30,992	△4,623	19,006
2018	27,962	24,385	28,718	△4,333	23,629
2017	36,647	43,765	52,168	△8,402	28,245
2016	33,774	83,381	80,508	2,873	36,647
2015	40,582	26,542	33,349	△6,807	33,775

〈표 3-24〉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2019(안)	270	22,534	22,500	34	304
2018	270	28,593	28,593	-	270
2017	179	20,091	20,000	91	270
2016	96	60,982	60,900	82	179
2015	10,000	4,096	14,000	△9,903	96

〈표 3-25〉 지출계획(안) 및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	사업명	지출계획 (안)	전년도 지출계획	증감
합 계		62,142	66,564	△4,42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계	39,338	37,688	1,650
	난방비지원	6,463	7,621	△1,157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703	590	112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13,683	14,671	△988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10,142	9,485	657
	보전지출(예치금)	8,346	5,319	3,026
수도권매립지 및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계	22,804	28,876	△6,07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22,500	28,500	△6,000
	예치금	304	376	△71

(9)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장애인·자활·주거지원의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음
- 동 기금의 '19년도말 조성액은 '18년도말 대비 82억 8,100만원이 감소한 423억 4,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임

〈표 3-26〉 사회복지기금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안)		2019년도말 조성액	증 감	증감률
		수 입	지 출			
사 회 복 지 기 금	50,627	23,113	31,394	42,346	△8,281	△16.4
노 인 복 지 계 정	13,425	322,805	973	12,774	△651	△4.8
장 애 인 복 지 계 정	23,656	2,073	3,025	22,705	△951	△4.0
자 활 계 정	6,751	645	843	6,553	△197	△2.9
주 거 지 원 계 정	6,793	20,070	26,552	312	△6,481	△95.4

- 동 기금의 4개 계정중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의 경우 기금사업의 내용이 기본적인 복지수요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성을 갖는 바 기금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 체육진흥기금

-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음

〈표 3-27〉 체육진흥기금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2019(안)	56,196	9,648	10,623	△974	55,222
2018	58,441	7,605	9,850	△2,245	56,196
2017	57,916	9,014	8,489	524	58,441
2016	59,393	8,171	9,649	△1,477	57,916
2015	56,576	8,710	5,892	2,817	59,393

- 동 기금의 지출계획의 경우, 금년도보다 2억원 감소된 138억 5,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표 3-28〉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지출계획(안) 및 지출현황(A)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9 지출계획(안)	2018 ^{주1)}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13,854	14,054	8,254	58.7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	500	500	100.0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20	410	410	100.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32	332	332	100.0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80	30	30	100.0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820	600	600	100.0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10	20	20	100.0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60	60	48	80.0

※ 주1) '18.11. 5 현재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12081 ('18.11.26)

〈표 3-29〉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지출계획(안) 및 지출현황(B)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9 지출계획(안)	2018 ^{주1)}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05	205	205	100.0
2032 남북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450	-	-	-
경평축구 다큐멘터리방송제작지원	100	-	-	-
봉황기 전국고교대회 개최 지원	100	100	100	100.0
컬링 이벤트 경기 개최 지원	-	20	20	100.0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	-	50	0	0.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 개최	-	60	40	66.7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양궁장 휠체어 진입로 확보	-	20	20	100.0
88올림픽 30주년 기념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지원	-	10	10	100.0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	100	100	100.0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수립 용역	-	50	0	0.0
제100회 전국체전 시민위원회 발족식 개최	-	25	0	0.0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	200	189	94.5
체육 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	200	200	100.0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	250	250	250	100.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225	177	127	71.7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30	30	100.0
야구장 시설 개보수	3,600	3,360	2,418	71.9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291	50	0	0.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1,990	1,902	1,861	97.8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300	400	400	100.0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	198	198	0	0.0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 지원	40	40	40	100.0
서울컵 전국원드서핑대회 개최 지원	-	150	130	86.7
통일기원 전국 배구대회 개최 지원	-	10	10	100.0
서울문화고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	-	80	80	100.0
충무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	-	50	50	100.0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30	30	100.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240	118	0	0.0
기금 관리비	10	10	2	20.0
예치금	3,230	4,205	0	0.0

※ 주1) '18.11. 5 현재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12081 ('18.11.26)

- 다만, 동 기금의 지출계획중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에 2억 4,0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있으나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¹⁰⁾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동 지출계획의 경우,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4억 4,7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기금사업으로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2억 4,000만원)을 이중으로 편성 요청한 바
 - 기금운용계획이 기금사업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이중지원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난 11월21일 동 지출계획 사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제출된 안중 “서울 난지 야구장 조성”을 삭제하고 의결한 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결과 부결되어 일반회계에 편성 요청된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4,700만원)에 필요한 소요예산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되어 해당 부지를 취득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조차

10) 행정안전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74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기금의 지출사업으로 야구장 조성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판단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3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지출계획(안)

(단위 : 천원)

세 출 과 목	산 출 내 역
계	240,209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118,036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29,641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92,532

(11) 감채기금

- 동 기금은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의거, 2001년도부터 운용되고 있음
- '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6,156억 2,200만원이나 '19년도말 조성액은 38억 3,700만원으로 6,153억 5,100만원을 지출하여 제출하였음

〈표 3-31〉 감채기금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
		수 입	지 출	증 감	
2019(안)	615,622	3,566	615,351	△611,785	3,837
2018	178,407	864,761	427,546	437,215	615,622
2017	305,015	△125,607	422,447	549,055	178,407
2016	9,382	295,632	462,550	166,917	305,015
2015	9,069	293	8,369	8,075	9,382

- 지출계획의 경우 6,191억 8,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금년도 1,831억 6,000만원보다 4,360억 2,700만원 증가된 것임¹¹⁾

11)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509억 8,100만원, 기타회계진출금 2,570억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및 이자 3,073억 2,000만원, 여유자금 예치 38억 3,700만원을 편성

〈표 3-32〉 감채기금 사업의 지출계획(안) 및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9 지출계획(안)	2018 ^{주1)}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619,188	864,761	147,905	17.1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	50,981	75,465	74,210	98.3
기타회계전출금	257,000	100,000	-	0.0
여유자금예치 (감채기금)	3,837	611,925	-	0.0
지방채차입금 상환	300,000	70,000	70,000	100.0
지방채차입금 상환	7,320	7,320	3,660	50.0
기금관리비	50	50	35	70.0

※ 주1) '18.11. 5 현재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12081 ('18.11.26)

- '19년도 감채기금 지출계획중 2,570억원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회계간 전·출입할 것으로 계획하여, 감채기금의 지출계획중 기타회계전출금(2,570억원)을 편성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과목중 기금전입금(2,570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12)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써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비상재해 발생 시 이재민 응급 구호를 위한 「구호계정」으로 구분됨
- 재난계정의 경우, 금년도(4,991억 4,000만원)보다 42억 7,600만원 증가된 5,033억 8,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 구호계정은 금년도(2,100억 2,200만원)보다 342억 4,400만원 증가된 2,442억 6,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표 3-33〉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계정	사업명	지출계획	전년도지출계획	증감
총계		747,648	709,127	38,521
재난계정	소계	503,380	499,104	4,276
	재난예방	110,000	111,515	△1,515
	응급복구	35,000	35,000	-
	연구용역	2,000	300	1,700
	여유자금예치	356,374	352,282	4,092
	기금관리비	6	6	-
구호계정	소계	244,267	210,022	34,244
	이재민재해보상	346	346	-
	의료및구호비지원	409	359	50
	무더위쉼터냉방비지원	6,568	1,165	5,402
	여유자금예치	236,943	208,151	28,791

(13) 남북교류협력기금

- 동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음
- 동 기금은 금년도(108억 7,500만원)보다 244억 5,700만원 증가된 353억 3,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3-34〉 남북교류협력기금 세부사업의 지출계획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산출내역
계	35,332
남 북 교 류 협 력 사 업 ^{주)}	○ 남북교류협력사업 15,000
	- 평양 하수도 개량 450
	- 평양 상수도 개량 550
	- 서울-평양 간 동물교류 및 협력 200
	- 서울-평양 간 식물교류 및 협력 55
	- 서울-평양 문화 예술 교류 180
	-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 등 312
	-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지원 3,000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0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50
	- 서울-평양(경평) 축구대회 재개 2,400
	- 서울-평양 문화 예술 교류 3,000
	- 평양시 글로벌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지원 1,000
	- 6.15 공동선언 기념 학술회의 및 10.4 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300
	- 민관 학술·소통채널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0
	-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 2,500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400
- 민간 차원의 통일기반조성사업 지원 100	
-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200	
- 평양 산림녹화 지원 213	
여유자금 여치·예탁	○ 예치금 20,282
기금관리비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비용 등 일반운영비 50

주)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등을 통합

(14) 대외협력기금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중임
- **국내협력계정**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구성되는 바,
 - 지출계획의 경우 금년도(85억 200만원)보다 △27억 2,100만원 감소된 57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35〉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지출계획(안) 및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9 지출계획(안)	2018 ^{주1)}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5,781	8,502	3,199	37.6
서울-타 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300	150	74	49.3
청 소 년 역 사 문 화 교 류 사 업	450	450	356	9.1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1,000	-	0.0
지역상생 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370	288	94	32.6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22	22	11	50.0
서울 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500	320	148	46.3
타 시도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200	-	-	순증
우포늪 생태체험장내 서울생태 숲 조성	-	250	249	99.6
지역상생교류센터 조성 및 운영	-	2,420	1,872	77.3
평창 동계올림픽 시내버스 광고	-	394	394	100.0
여 유 자 금 예 치	2,936	3,204	-	0.0
기 금 관 리 비	3	3	1	33.3

※ 주1) '18.11. 5 현재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12081 ('18.11.26)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 지출계획의 경우 금년도(59억 4,500만원)보다 7억 2,700만원 증가된 66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36〉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지출계획(안) 및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9 지출계획(안)	2018 ^{주1)}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총 계	6,672	5,945	1,537	25.8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1,113	746	577	77.3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574	465	315	67.7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98	69	34	49.2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20	20	-	-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70	70	55	78.5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	670	257	38.3
개도국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116	90	66	73.3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	65	100	60	60.0
국제 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01	-	-	-
개도국 국제장애인자립지원 공모사업	300	-	-	-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500	500	170	34.0
여유자금예치	3,508	3,209	-	0.0
기금관리비	5	5	1	20.0

※ 주1) '18.11. 5 현재

자료근거 : 재정관리담당관-12081 ('18.11.26)

(15) 지역개발기금

- 동 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조성으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으나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음¹²⁾
- 지출계획의 경우 금년도(9억 1,3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 증가된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37〉 지역개발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9 (안)	2018	증감
계	1,048	913	134
여유자금예치	1,034	899	134
기금관리비	14	14	-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제2조가 정의하는 “기금”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하였으나 동조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을 기금으로 정의하고,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그동안 특별회계로 편성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임

(10) 도시재생기금

- 동 기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 및 지역자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7년 3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을 '18년도부터 운용 중에 있음
- 지출계획의 경우 금년도(338억 9,700만원)보다 37억 7,500만원 증가된 376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38〉 도시재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9(안)	2018	증감
계	37,672	33,897	3,775
도시재생기반조성	33,894	24,731	9,163
주민역량강화	3,768	9,156	△5,388
기금관리비	10	10	-

2019년말 기금 순자산 규모

(단위 : 억원)

기금명	2019년말 추정 자산규모						
	자 산					부채	순자산
	계(A)	현금과 예금	예탁금	융자금	기타 자산	예수금(B)	계(A-B)
합 계	54,758	10,013	20,832	8,179	15,734	13,763	40,995
재정 투융자기금	22,349	2,639	18,496	1,214	-	8,560	13,789
중소기업육성기금	5,712	161	0	5,433	118	2,576	3,136
식품진흥기금	669	38	605	26	-	-	669
기후변화기금	1,197	512	135	550	-	-	1,197
사회투자기금	726	67	-	659	-	-	726
도로굴착복구기금	112	112	-	-	-	-	112
성평등기금 (구 여성발전기금)	240	2	238	-	-	-	240
자원회수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94	87	107	-	-	-	194
사회복지기금	720	115	308	297	-	-	720
체육진흥기금	552	32	520	-	-	-	552
감채기금	15,654	38	-	-	15,616	2,598	13,056
재난관리기금	6,266	5,933	333	-	-	-	6,266
남북교류협력기금	244	203	41	-	-	-	244
대외협력기금	64	64	-	-	-	29	35
지역개발기금	59	10	49	-	-	-	59
도시재생기금	0	-	-	-	-	-	0

IV.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8. 12. 3(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소위원회(9명)
 - 위 원 장 : 김광수(환경수자원)
 - 부위원장 : 우형찬(교통), 장상기(교육)
 - 위 원 : 김호평(행정자치), 채인묵(기획경제), 김인호(문화체육관광), 김화숙(보건복지), 고병국(도시계획), 정진술(도시안전)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12. 7(금) 10:00 ~ 18: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12. 8(토) 10:00 ~ 20: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12. 10(월) 10:0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12. 11(화) 10:00 ~ 23: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12. 12(수) 10:00 ~ 22: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6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12. 13(목) 10:0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8. 12. 14(금) 14:00 (제5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우형찬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 부 :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0
----------	-----------

2018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I.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 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다.

II. 수정 주요 골자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당초 운용 계획안	조 정 내 역			수정 운용 계획안	비 고
		소 계	증 액	감 액		
계	3,073,791,748	△34,000,000		△34,000,000	3,039,791,748	
재정투융자기금	1,028,449,299	△34,000,000	-	△34,000,000	994,449,299	예결위, 수입 : 예탁금상환 (34,000백) 감 예결위, 지출 : 예치금 (34,000백) 감
중소기업육성기금 용 자 계 정	309,566,076	-	-	-	309,566,076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22,480,731	-	-	-	22,480,731	
식품진흥기금	8,673,335	-	-	-	8,673,335	
기후변화기금	66,400,219	-	-	-	66,400,219	
사회투자기금	28,567,500	-	-	-	28,567,500	
도로굴착복구기금	36,234,519	-	-	-	36,234,519	
성 평 등 기 금	1,159,131	-	-	-	1,159,131	
자원화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자원기금 주민지원계정	39,338,758	-	-	-	39,338,758	
자원화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자원기금 수도권매립사계정	22,804,339	-	-	-	22,804,33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748,007	-	-	-	1,748,007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1,330,897	-	-	-	11,330,897	

기 금 명	당초 운용 계획안	조 정 내 역			수정 운용 계획안	비 고
		소 계	증 액	감 액		
사회복지기금 자 활 계 정	2,976,989	-	-	-	2,976,989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6,864,907	-	-	-	26,864,907	상임위, 지출 : 사업비(100백) 증 예치금(100백) 감
체육진흥기금	13,854,031	-	-	-	13,854,031	상임위, 지출 : 사업비(170백) 증 예치금(170백) 감 예결위, 지출 : 사업비(200백) 증 예치금(200백) 감
감 채 기 금	619,188,400	-	-	-	619,188,400	
재난관리기금 재 난 계 정	503,380,410	-	-	-	503,380,410	
재난관리기금 구 호 계 정	244,267,918	-	-	-	244,267,918	
남북교류협력기금	35,332,516	-	-	-	35,332,516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5,781,136	-	-	-	5,781,136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6,672,166	-	-	-	6,672,166	
지역개발기금	1,048,464	-	-	-	1,048,464	
도시재생기금	37,672,000	-	-	-	37,672,000	

2. 수정(안) 내역

□ 재정투융자기금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합 계		1,028,449,299	994,449,299	△34,000,000	
세외수입		9,887,000	9,887,000	-	-
경상적 세외수입		9,887,000	9,887,000	-	-
이자수입		9,887,000	9,887,000	-	-
공공예금이자수입		6,154,000	6,154,000	-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733,000	3,733,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18,562,299	984,562,299	△34,000,000	-
보전수입등		728,248,103	728,248,103	-	-
융자금원리금회수수입		19,753,000	89,753,000	70,000,000	○ 융자금원리금(교통공사) 수입 조정 19,753,000 → 89,753,000천원 (70,000,000)
예치금회수		708,495,103	638,495,103	△70,000,000	○ 예치금 조정 708,495,103 → 630,495,103천원 (△70,000,000)
내부거래		290,314,196	256,314,196	△34,000,000	-
예탁금및예수금		290,314,196	256,314,196	△34,000,000	-
예수금		13,294,196	13,294,196	-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56,130,000	222,130,000	△34,000,000	○ 도시개발특별회계 조정 120,000,000 → 86,000,000천원 (△34,000,000)
예탁금이자수입		20,890,000	20,890,000	-	-

○ 지 출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Δ) 감	수 정 내 역
	세부 사업	편성목				
합 계			1,028,449,299	994,449,299	Δ34,000,000	-
재무활동			1,028,447,299	994,447,299	-	-
	내부거래지출		764,524,299	764,524,299	-	-
		기금. 특별회계 융자지원	764,524,299	764,524,299	-	-
		예 탁 금	331,100,000	331,100,000	-	-
		예수금 원리금 상환	433,424,299	433,424,299	-	-
	보전지출		263,923,000	229,923,000	-	-
		여유자금 예치	263,923,000	229,923,000	Δ34,000,000	
		예치금	263,923,000	229,923,000	Δ34,000,000	○ 예치금 자금 조정액 263,923,000 → 229,923,000 (Δ34,000,000)
기 타			2,000	2,000	-	-
	행정운영경비		2,000	2,000	-	-
		기금관리비	2,000	2,000	-	-
		일반운영비	2,000	2,000	-	-
		기금관리비	2,000	2,000	-	-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출안	수정안	증(Δ) 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합 계			26,864,907	26,864,907	0	
주거복지 수준제고			26,552,500	26,652,500	100,000	
	주거복지센터 운영		3,902,500	4,002,500	100,000	
		민간이전	3,902,500	4,002,500	100,000	○사업비 증액 - 저층주거지 공동체 활성화 예산 1억원 증액(주거복지센터 운영비) (100,000)
일반예산(재무활동)			312,407	212,407	△100,000	
	여유자금예치		312,407	212,407	△100,000	
		예치금	312,407	212,407	△100,000	○사업 증액에 따른 예치금조정 312,407 → 212,407 (△100,000)

□ 체육진흥기금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출안	수정안	증(Δ) 감	수정내역
정책사업	세부사업				
합 계		13,854,031	13,854,031	0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7,844,608	8,134,608	290,000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60,000	150,000	9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0	150,000	9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증액 -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해외연수(50,000) - 자치구체육회 운영 활성화(40,000) 60,000 → 150,000(90,000)
	서울 승마스포츠 육성 사업	-	200,000	20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	200,000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편성 (×) → 200,000(200,000)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2,769,033	2,849,033	80,000	
	서울컵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 지원	-	80,000	8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	80,000	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 편성 (×) → 80,000(80,000)
일반예산(재무활동)		3,230,390	2,860,390	△370,000	
	여유자금예치	3,230,390	2,860,390	△370,000	
	예치금	3,230,390	2,860,390	△3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가 편성에 따른 예치금 조정 3,230,390 → 2,860,390(△370,000)